#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0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윤준병・임호선・박희승

이병진 · 서영교 · 이춘석

허종식 • 한병도 • 이재관

정동영 · 이정헌 · 이상식

한창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해체계획서"를 "해체계획서(제5항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③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	
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	
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u>해체계획서</u> 를 첨	<u>해체계획서(제5항</u>
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야 한다.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
	체계획서를 말한다)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⑤
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	
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
	모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